

특수교육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 학생 및 가족을 위한 보호절차규정 잠정통지안내서

장애인교육개선법 제 B 부와
특수교육에 관한 연방 법규가
규정하는 요건



Terry Bergeson 박사
주 공립학교 교육감

2007 년 1 월 개정

**특수교육 학생 및 가족을 위한
보호절차규정 잠정통지안내서**

Terry Bergeson 박사
주 공립학교 교육감

Cathy Davidson 박사
교직원 참모

Bob Harmon
특수교육 학생담당
부교육감

Douglas H. Gill 박사
특수교육 관리자

본 책자는 공립교육청(OSPI: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이 2004년 장애인교육개선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한 것으로서 허가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의 사본이 더 필요할 때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k12.wa.us/SpecialEd/pubdocs/PS_Booklet.pdf

간행물 번호: 07-0001

신청하시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외 다른 형식(예: 점자)으로 된 책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수교육부 (360)725-6075, TTY (360)586-0126 으로 연락하시거나 speced@k12.wa.u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립교육청(OSPI)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제정한 모든 규칙 규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또는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2007년 1월

일반 정보	1
머리말	1
본 책자 제공 대상	1
무상적정 공립교육	1
문의 안내	2
보호절차규정 통지	2
사전 서면 통보	2
모국어	4
전자우편(이메일)	4
학부모 동의 - 정의	4
학부모 동의 - 요건	5
초기 평가 동의	5
피보호 아동의 초기 평가에 대한 특별 규정	5
초기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6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	7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기록	7
기타 동의 요건	7
학부모 참여	8
학부모와 해당 교육 간의 IEP 회의 및 재평가에 관한 합의	8
IEP 회의 합의	8
재평가 합의	9
합의 철회	9
성년 학생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이전	9
외부교육평가	10
정의	10
공공자금으로 받는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10

학부모 부담으로 실시한 외부교육평가	11
행정법 판사(ALJ)의 평가 요청	11
교육구 기준	11
정보의 비밀보장	11
정의	11
개인 신상정보	12
학부모에게 통지	12
기록 열람/검토권	13
열람/검토에 대한 기록	13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기록	13
기록 종류와 입수 장소 리스트	14
수수료	14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변경	14
심의회 기회	14
심의회 절차	14
심의회 결과	14
개인 신상정보 공개 동의	15
보호	15
정보(문서) 파기, 유치 및 보관	16
교육 기록부 전송	16
특수교육 분쟁해결절차	16
조정	17
일반	17
조정인의 공명정대	17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와 특수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의 조사 차이점	18
시민의 이의신청절차	18

관련 기관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아래의 기관들은 워싱턴 주에서 실시되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Washington PAVE

6316 So. 12th St.
Tacoma, WA 98465
(253)565-2266 (v/tty)
1-800-5-PARENT(v/tty)
팩스: (253)566-8052

wapave9@washingtonpave.com

Washington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315 5th Ave. S. #850
Seattle, WA 98104
(206)324-1521 / (800)562-2702
TDD: (800)905-0209

wpas@wpas-rights.org

Kristin Hennessey, Ombudsman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
(360)725-6075

Kristin.hennessey@k12.wa.us

학부모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그러나 배상비용은,

(a) 학부모가 통지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가 학교가 막은 경우, (b) 위에서 설명한 학부모의 통지제공책임에 대한 통지를 학부모가 받지 못한 경우, (c) 상기 요건을 준수하면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행정법판사(ALJ)의 재량으로 (a) 학부모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b) 위의 요건을 준수하면 학생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학부모가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18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9
조사기간 연장, 결정서	19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조치	19
특수교육 시민 이의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심의회	20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 절차	20
일반	20
신청서 제출	20
심의회 이전 심의회 신청서에 관한 통지 필요	21
심의회 신청서의 충분성	21
심의회 신청서 수정	21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대한 교육구의 답변	22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22
견본 양식	22
심의회 신청 및 심의회 절차 진행 동안의 학생 배치	23
문제해결절차	23
문제해결회의	23
문제해결기간	24
30 일간의 문제해결기간의 조정/변경	25
해결 합의서	25
합의검토기간	25
적법절차 심의회	26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	26
일반	26
행정법판사(ALJ)	26
적법절차 심의회 심의 대상	26

심의회 신청 시한	26
신청 시한의 예외	27
심의회에서의 권리	27
일반	27
추가 공개 정보	28
심의회에서의 학부모 권리	28
심의회 결정	28
행정법판사(ALJ)의 결정	28
해석조항	28
별도의 심의회 신청	28
사실인정서와 결정서를 자문단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	29
재판청구에 따른 이의제기	29
결정의 최종성, 재판청구에 따른 이의제기	29
심의회 및 검토 일정 및 편의성	29
민사소송(제소기간 포함)	30
일반	30
시한	30
추가 절차	30
지방법원의 관할	30
해석조항	30
변호사 수입료	31
일반	31
변호사 비용의 결정	31
장애학생의 징계절차	32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학과 제적 규정	32
학교직원의 권한	33

학부모가 공공자금으로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의 요건

CFR § 300.148; WAC 392-172-231

사립학교에 배치하는 경우의 배상

학생이 교육구의 권한에 따라 이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고 학부모가 교육구의 동의나 의뢰 없이 학생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등록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행정법판사(ALJ)는, 해당 교육구가 등록 전에 해당 학생에게 FAPE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학부모에게 등록비를 배상하도록 해당 교육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판사(ALJ) 또는 법원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주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

위에서 명시한 배상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감액 또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 (a)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배제되기 전 학부모가 참석했던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교육구가 학부모의 우려표명과 공공자금으로 학생을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의도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FAPE 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했던 배치를 학부모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가 IEP 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또는
- (b)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배제하기 업무일로 10 일 전까지(영업일과 겹치는 공휴일 포함) 학부모가 이 정보에 대한 통지서를 교육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배제되기 전에 교육구가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전 통지서(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의 진술 포함)를 학부모에게 제공했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평가에 임하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생은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정학이나 퇴학을 포함하여 학교당국이 결정하는 교육적 환경에 계속 배치됩니다.

교육구가 수행하는 평가에 따른 정보와 학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할 때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육구는 위에서 설명한 징계요건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IDEA 제B부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에의 의뢰 및 이들 기관의 조치
34 CFR §300.535; WAC 392-172-385

IDEA 제 B 부는,

교육구가 장애학생의 범죄를 해당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또는

주 정부 법률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이 연방 및 주 법률을 장애학생이 범한 범죄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책임의 행사를 막지 않습니다..

기록 송부

교육구가 장애학생이 범한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 교육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기록 사본을 송부하여 범죄신고를 받은 당국이 검토할 수 있게 함, 그리고

FERPA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기록 사본을 전송함

사례별 판결	33
일반	33
추가 권한	34
서비스	34
장애증상 결정	35
학생의 장애증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사실의 결정	35
특수 정황	36
정의	36
징계조치에 따른 배치 변경	37
통지	37
환경의 결정	37
징계를 위한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	37
행정법판사(ALJ)	38
간이 심의회 중의 배치	39
아직 특수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39
일반	39
징계문제에 대해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근거	39
예외	40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	40
법 집행기관과 사법기관에의 의뢰 및 이들 기관의 조치	41
기록 송부	41
학부모가 공공자금으로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의 요건	41
사립학교에 배치하는 경우의 배상	41
배상 한도	41
자원	43

일반 정보

머리말

2004 년 장애인교육법(IDEA)은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 장애학생이라고 의뢰되거나 판결된 유자격 장애학생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보장하는 연방 교육법입니다. 장애인교육법(IDEA)은 또한 IDEA 및 미국 교육부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 부모님께 보호절차규정(오른쪽) 설명문 한 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정부 산하 교육기관인 공립교육청(OSPI)은 학부모님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해 2005 년 7 월 1 일자로 발효된 연방 법규와 2006 년 10 월 13 일에 발효된 연방 법규 개정에 맞춰 갱신한 본 보호절차규정에 관한 잠정통지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본 책자는 미국 교육부의 견본 보호절차규정 통지문(2006 년 8 월)과 워싱턴 주 고유의 요건에 부합됩니다.

워싱턴 주 행정법(WAC) 제 392-172 장에 워싱턴 주의 특수교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주 행정법(WAC)이 연방 법규와 일치하지 않을 때 본 통지문은 연방 법률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워싱턴 주 행정법(WAC)의 규정은 주 정부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 보호절차규정 통지문은 워싱턴 주 규정을 개정하는 동안 주민들이 해석에 사용할 잠정 책자입니다.

본 책자 수령 대상: 본 책자는 학부모, 대리 부모 및 성인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 또는 '학부모' 및 '학생'이라는 표현은 대리 부모와 성인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본 책자에 나오는 '교육구' 또는 '교육지구'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교육 서비스 지구에 적용됩니다.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워싱턴 주의 교육구는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하여 보호절차규정 책자를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이해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적정 공립교육(FAPE):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른 무상적정 공립교육(FAPE)이란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징계문제에 대해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근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구가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부모가 서면으로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해당 교육기관의 감독직원 또는 행정직원 또는 학생의 교사에게 표명한 경우

학부모가 IDEA 제B부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에 관련된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학생의 교사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이 해당 학생이 보인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염려를 교육구의 특수교육 담당이사 또는 교육구의 다른 감독직원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절한 경우, 또는

학생이 장애학생이 아니라고 평가 결정된 경우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기 전에 교육구가 소제목 '**징계문제에 대해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근거**', **'예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 유사한 행동을 벌인 장애 없는 정상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조치를 해당 학생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져 있는 기간에 학생의 평가가 요청된 경우 간이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한 통지서를 접수한 때부터 7일(달력 기준) 이내에 문제해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문제를 양 당사자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심의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OSPI가 증거제출기간을 업무일로 2일로 정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간이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다른 적법절차 심의회 결정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기 **‘재판청구에 따른 이의제기’** 참조)

간이 심의회 중의 배치

34 CFR §300.533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학생은 (학부모와 교육구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점과 제목 **‘학교 직원의 권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제기간의 만료 시점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임시 대체 교육환경에 계속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특수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34 CFR §300.534; WAC 392-172-38410

일반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행동강령을 위반했지만 교육구가 징계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학생은 이 통지문제에 기술된 보호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3~21 세의 학생들입니다. 해당 연도 8 월 31 일 이후에 21 세가 되는 학생은 그해 남은 기간까지 적절한 무상공립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인 교도국에 수감된 학생들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18 세까지 적절한 무상공립교육(FAPE)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제약을 덜 받는 환경에서 적절한 무상공립교육(FAPE)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문의 안내: 특수교육과 이 보호절차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의 학교 교장이나 특수교육담당 책임자, 워싱턴 주 학부모 교육센터, PAVE(Parents are Vital in Education) 또는 OSPI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립교육청(OSPI)의 웹사이트 <http://www.k12.wa.us/specialed>를 확인하면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공립교육청(OSPI)은 프로그램 감독관과 특수교육 민원처리사를 두어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점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립교육청, 특수교육부, (360)725-6075, TTY (360)586-0126 으로 연락하시거나 speced@k12.wa.u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절차규정 통지

34 CFR § 300.504

본 책자 사본은 (1) 의뢰를 개시하거나 평가를 요청했을 경우, (2) 당해 학년도에 특수교육 장애학생이 이의제기를 처음 신청했을 경우, (3) 당해 학년도에 적법절차 심의회를 처음 신청했을 경우, (4) 학생의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징계조치를 결정할 경우, (5) 학부모가 사본을 요청할 경우 학년도별로 학부모님께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교육법(IDEA)에는 공공자금으로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의 보호절차, 특수교육 장애학생의 이의신청절차, 동의, IDEA 규정 제 B 부 제 E 편의 보호절차, IDEA 규정 제 B 부 제 F 편의 정보의 비밀보장 규정 등에 관한 상세 설명 등을 이 보호절차 통지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이 통지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독자적인 보호절차 통지문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34 CFR §300.503; WAC 392-172-302 및 304

학부모는 학생의 특수교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교육구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 통보라고 하며, 사전 통보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가 결정한 사안들이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교육구는 결정사항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항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장애, 파악, 평가, 배치 및 적절한 무상공립교육(FAPE)의 시행 제안이나 거부사항 등과 관련된 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사항
- 교육구가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
-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이 고려하는 대안 및 해당 대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한 설명
- 해당 조치의 기반이 되는 각 평가절차, 판단, 기록 및 보고서에 대한 기술
- 해당 조치와 관련한 여타 요소에 대한 기술
- 초기 평가와 이후의 재평가들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구가 제안한 평가절차
- 본 책자에 설명된 보호절차규정에 따라 학부모가 보호를 받는다는 진술서
- 본 보호절차 통지문을 얻는 방법 또는 *보호절차 통지문(Procedural Safeguards Notice)*의 제목으로 설명된 책자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본 보호절차 통지문 포함, 그리고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목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절을 참조하십시오..

행정법판사(ALJ)

행정법판사(ALJ)는 적법절차 심의회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법판사(ALJ)는,

배제조치가 제목 '학교직원의 권한'절에서 설명한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학생의 행동이 장애증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장애학생을 이전에 배제했던 교육적 배치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현재 배치된 환경에 계속 있게 되면 해당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장애학생의 배치를 **수업일로 최대 45일** 동안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환경으로 옮길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심의회 절차는 교육구가 학생을 원래 배치로 복귀시키는 것이 해당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육구가 심의회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목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절차',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설명한 요건에 부합되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OSPI는 간이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 심의회는 신청일부터 20일(수업일 기준)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심의회가 열린 때부터 10일(수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회의를 생략하기로 서면 합의하는 경우,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에

학생의 행동이 일련의 배제조치를 발생하게 했던 이전의 사건에서 보인 학생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함

각 배제조치의 기간, 학생이 배제되었던 총 시간, 배제조치 간의 근접성 등과 같은 추가 요소로 인해 일정한 경향을 형성함, **그리고**

일정한 경향의 배제조치가 배치 변경을 형성하는지를 교육구가 사례별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절차 심의회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 심의함

통지

교육구는 학생행동강령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처벌로 학생의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배제조치'라는 결정을 내린 날, 이 결정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면서 보호절차 통지문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의 결정
34 CFR § 300.531

IEP 팀은 배치의 변경인 배제조치, 상기 제목 '**추가 권한**', '**특수 상황**'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 대체 교육환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를 위한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
34 CFR § 300.532; WAC 392-172-38400

장애학생의 학부모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절차 심의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징계조항에 따라 내려진 배치 결정, **또는**

위에서 설명한 장애증상 결정

교육구는 학생이 현재 배치된 환경에 계속 있게 되면 해당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절차 심의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호절차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
다음과 같을 때 사전 서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 학생이 장애가 있다고 추정되거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잠재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
- 교육구가 학생을 평가 또는 재평가하길 원하거나, 평가 또는 재평가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 학생의 IEP 또는 배치가 변경될 경우
- 학부모가 변경을 요구했으나 교육구가 이를 거절할 경우

확실하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의 모국어나 수화와 같은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통보할 때는 반드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가 아닐 경우 교육구는 반드시 (1) 구두로 혹은 학부모의 모국어를 이용한 다른 방법, 기타 의사소통 방법을 동원해 통보해야 하고 (2) 학부모가 해당 통보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3)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모국어
34 CFR §300.29; WAC 392-172-040

모국어란 영어가 숙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해당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 언어, 또는 해당 사람이 학생인 경우 학생의 부모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
학생과 직접적으로 접촉(학생의 평가 포함)할 때 해당 학생이 집이나 학습 환경에서 보통 사용하는 언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의사소통은 그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합니다(예: 수화, 점자, 구두 등).

전자우편(이메일)

34 CFR 300.505

학부모가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보호절차규정 통지문, 그리고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과 관련된 고지

학부모의 동의 - 정의

34 CFR §300.9; WAC 392-172-040

동의의 의미

동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법(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으로 모두 받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이해했음을 뜻합니다.

학부모가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해당 조치를 명시하고, 공개될 기록과 공개할 상대방을 동의로 명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는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을 뜻합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동의를 철회한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미 발생한 행위나 동의 철회가 이루어지기 전의 행위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나 학교 구내 또는 OSPI나 교육구가 관할하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부상(아래 정의 참조)을 입힌 경우

정의

규제약물은 규제약물법(미국법전(U.S.C) 제21조 812(c)호) 제202(c)항의 부칙 I, II, III, IV 또는 V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이나 기타 약물을 의미합니다.

불법마약은 규제약물을 의미하지만 허가받은 보건 전문가의 감독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사용하는 규제약물 또는 장애인교육법이나 연방법의 기타 규정에 따른 기타 권한에 의거해 소유 및 사용하는 약물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신체부상은 사망위험이 상당하거나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 또는 장기적이고 명백한 외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신체부위나 기관 기능의 장기적 손상을 초래하는 신체부상을 말합니다.

총기에는 총, 설비 기구, 기계, 용구, 생물 혹은 무생물의 물질 등이 포함되며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상해를 초래하는 데 사용되거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길이가 1.5~2인치 미만인 칼날을 사용한 주머니 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징계조치에 따른 배치 변경

34 CFR §300.536; WAC 392-172-373

다음의 경우에 장애학생을 현재의 교육배치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배치 변경**에 해당됩니다.

배제조치가 수업일로 10일간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 또는

학생에게 내려진 일련의 배제조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정한 경향을 형성하는 경우

일련의 배제조치가 특정 학년 내에 합산하여 수업일로 10일이 넘음

학생의 장애증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사실의 결정

교육구, 학부모, IEP 팀의 관련 팀원이 행동이 학생의 장애증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IEP 팀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배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구가 기능적 행동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기능적 행동평가를 수행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개입계획을 실시함, 또는

행동개입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으면 행동개입계획을 검토하여 행동을 다루기 위한 필요한 수정작업을 수행함

아래의 소제목 '**특수 정황**'에서 기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학부모와 교육구가 행동개입계획 수정작업의 일부로 환경 배치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을 이전에 배제되었던 환경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특수 정황

행동이 학생의 장애증상 때문인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직원은 학생을 수업일로 최대 45일 동안 (학생의 IEP팀이 결정하는)임시 대체 교육환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학생이 무기(아래 정의 참조)를 휴대하고 등교하는 경우, 혹은 학교나 학교 구내 또는 OSPI나 교육구가 관할하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생이 고의적으로 학교나 학교 구내 또는 OSPI나 교육구가 관할하는 학교 행사에서 불법 마약(아래 정의 참조)을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규제대상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 동의 - 요건

34 CFR §300.300; WAC 392-172-302

초기 평가 동의

교육구는 사전에 서면으로 교육구가 제안하는 평가에 대해 설명해 놓은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학생에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초기 평가에 동의한다고 해서 교육구가 학생에게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현재 공립학교 학생이거나 학부모가 학생을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면서 교육구가 제안하는 초기 평가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학부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 책자 뒷면의 설명처럼 조정이나 적법절차 심의회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초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사정이 이와 같은 학생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학생을 찾아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교육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호 아동의 초기 평가에 대한 특별 규정

학생이 주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면 교육구는 장애학생 파악을 위한 초기 평가 실시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구가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학부모를 찾았지만 학부모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주법으로 학부모의 권리가 소실되었을 경우, 또는

판사가 학생의 교육을 결정할 다른 보호인을 지정하였고 부모가 아닌 그 사람이 초기 평가에 동의할 경우

IDEA에서 사용하는 피보호 아동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아동

워싱턴 주법 아래 고려된 피보호 아동 또는

주 정부 아동복지기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

위탁 부모를 둔 위탁 아동은 피보호 아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기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교육구는 맨 처음으로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기 위해 합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학생에게 처음으로 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거나 학부모가 동의서 제공을 거절할 경우, 교육구는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동의서나 명령서를 획득하기 위해 조정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해당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을 시 교육구는 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학생에게 적절한 무상공립교육(FAPE)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

그리고

장애학생이 동일한 학년 이내에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현재 배치된 환경에서 배제된 후이거나 현재의 배제조치가 연속하여 수업일로 10일 이하이고 배제조치가 학생의 배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아래 정의 참조) 학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교사 1명 이상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에서지만 학생이 일반적인 교육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배제조치 때문에 이미 배치된 환경을 변경해야 한다면(아래 정의 참조)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은 다른 환경에서지만 학생이 일반적인 교육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장애증상 결정

학생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장애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진 지 수업일 로 10 일 이내에(제목 '징계조치에 따른 배치의 변경' 참조) 교육구, 학부모, (학부모와 교육구가 결정하는)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의 관련 팀원은 학생 IEP를 포함한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 교사의 관찰 결과, 학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에 기인한 것이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는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교육구가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을 실행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지 여부

교육구, 학부모, 학생의 IEP팀의 관련 팀원들이 이들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동이 학생 장애의 증상이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구, 학부모, 학생의 IEP팀의 관련 팀원들이 문제의 행동이 교육구가 IEP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 결과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교육구는 이 IEP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동일한 학년 내에 현재 배치된 환경에서 **수업일로 총 10 일** 동안 배제되었다면 교육구는 해당 학년 내 이후 배제기간 중에 아래 소제목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권한

학생행동강령을 위반한 행동이 학생의 장애증상이 아닌(아래 ‘**장애증상 결정**’ 참조) 징계로 인한 배치 변경이 연속하여 **수업일로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직원은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아래 ‘서비스’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아닌 학생과 동일한 방식 및 기간으로 징계절차를 해당 장애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은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 대체 교육환경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현재 배치된 환경에서 배제된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임시 대체 교육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와 유사한 배제조치를 받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학년 내에 **10일 이하의 수업일** 동안 현재의 환경에서 배제된 장애학생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배치된 환경에서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배제된 장애학생은,

환경이 다르지만 학생이 일반적인 교육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 행동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도의 적절한 기능적 행동평가, 행동개입 서비스 및 수정 작업 등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요청되었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학생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의 회의를 개최 또는 개발할 의무가 없음..

학생이 받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나면 교육구는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학생은 다음 기간까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학생을 다시 평가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장애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 또한

학생이 21 세가 되었을 경우(또는 학생에 따라 8 월 31 일 이후에 21 세가 되는 학생은 그해 남은 기간까지 자격이 있음)

학부모는 교육구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는 초기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동의 내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이 서비스가 개시된 후에는 특수교육을 제공해야 할 교육구의 의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

교육구는 다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테스트를 통해 학생을 재평가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학생의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리고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구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될 추가 테스트에 학부모가 동의하기를 거절할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또는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거절을 반복시키기 위해 조정이나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평가처럼 교육구가 재평가 수행을 위한 학부모 동의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IDEA 제 B 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기록

학교는 초기 평가 시, 최초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새 테스트를 통한 재평가 때, 그리고 초기 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려고 아동 부모의 행방을 찾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야만 합니다. 문서에는 반드시 상기 사항에 관해 교육구가 시도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 통화했거나 통화하려고 시도한 전화의 세부 기록 및 통화 결과

학부모와 공립교육기관 양자 간에 왕래한 통신문 사본, 그리고

학부모의 가정 또는 직장 방문, 그리고 방문 결과에 대한 세부 기록

기타 동의 요건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다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재평가의 일환으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자료 검토, 또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 단,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테스트나 평가일 경우에는 제외.

교육구는 하나의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 거절건을 다른 서비스나 혜택 및 활동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 홈스쿨 학생, 초기 평가나 재평가 실시를 위해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요청한 동의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또는 학부모의 동의 거절을 반복하기 위해 조정이나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자녀가 공정한

WAC 제 392-400 장에 따를 때 정확은 단일한 과목, 수업기간 또는 수업 전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조치입니다.. 제적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만 단일 과목이나 수업 시간 또는 전체 수업 스케줄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교육구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절차를 제안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처벌조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담당자 또는 담당자들이 참작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수교육과 처벌 기록을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일반 교육절차 및 교육구의 심의회 절차에 따라 징계에 관한 교육구의 결정을 논쟁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 시한은 교육구가 특수교육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특수교육 적법절차 심의회를 신청할 때의 시한과는 다릅니다.

학교직원의 권한

34 CFR §300.530

사례별 판결

학교직원은 징계에 관한 아래의 요건에 따라 결정한 배치 결정이 학교 학생행동강령을 위반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독특한 사정을 사례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애 없는 정상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직원은 학생행동강령을 위반한 장애학생에게 연속하여 수업일로 10일 동안 현재 배치된 환경에서(학생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팀이 결정하는)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환경, 다른 환경 또는 정확조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학교직원은 또한 별도의 비행사건을 이유로 동일한 학년 내에 최대 수업일로 10일까지의 배제조치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제조치는 학생의 교육적 배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정의는 아래 '징계조치에 따른 배치의 변경' 참조).

지금 결정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 수입료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능력, 명성 및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이나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입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지나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 통지에서 제목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명시된 적절한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법원은 주 정부나 교육구가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했거나 IDEA 제B부의 보호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징계절차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정학과 제적 규정 WAC 392-400

교육구가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는 경우 교육구는 그 조치가 모든 학생의 처벌에 적용되는 워싱턴 주법과 징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 처벌 규정은 워싱턴 주 행정조례(WAC) 392-400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는 다양한 형태의 비행을 기술하고 해당 행위에 주어지는 처벌을 지정해 놓은 방침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구 절차에서는 또한 학부모가 이들 규정에 따른 교육구의 학생 징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징계는 교육구의 방침과 절차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교육구가 학생의 품행을 교정해 줄 다른 형태의 개선조치를 시도해보기 전에 학생을 정학 또는 제적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서비스(학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부모 참여 34 CFR §§300.322 및 300.501; WAC 392-172-105

학부모는 학생의 특수교육 필요에 관한 모든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평가의 필요성, 특수교육 수혜자격, 학생의 IEP 개발 또는 변경 및 배치 결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 학부모의 참여 권리도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를 포함시키지 않고 학생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는 시행 예정인 IEP 회의, 학습계획 및 서비스 제공 조정을 위한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와 연관 있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회의에 학부모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해당 교육 간의 IEP회의 및 재평가에 관한 합의 34 CFR §§300.303, 300.321, 300.328

IEP 회의 합의

학부모와 교육구는 학생의 IEP 개발과 관련한 일부 절차 요건을 제외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와 교육구가 연간 IEP를 개발한 후에 회의 없이 학생의 IEP를 변경하는 데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전체 IEP를 재작성하는 대신 학생 IEP를 변경 수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요청이 있으면 개정사항이 반영된 학생의 IEP 개정본을 재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의 IEP를 변경한 경우에는 학생의 IEP팀의 모든 팀원들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IEP에 따른 자신들의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IEP 팀원의 IEP 회의 참석을 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전체 또는 일부).

3. 학부모와 교육구가 해당 IEP팀원의 교과과정 분야 또는 관련 서비스가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팀원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4. 회의에서 해당 팀원 교과과정 분야 또는 관련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논의하지만 학부모와 교육구가 해당 팀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상태하에 참석을 면제받은 IEP 팀원은 반드시 회의 전에 서면으로 IEP 개발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와 IEP 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5. 학부모와 교육구는 화상회의나 전화회의와 같이 IEP 팀 및 배치회의에 대한 대체 참석 수단을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합의

학부모와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학부모 및 교육구가 합의하는 경우에 3년마다 1 회 이상 재평가를 수행해야 할 요건을 포기한다..

학생을 1 년에 1 회 이상 재평가해야 한다..

합의 철회

합의를 철회하더라도 합의가 있었을 때 행해진 조치에 대한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철회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성년 학생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이전
34 CFR §300.520; WAC 392-172-309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할 때는 어떤 보너스나 승수(Multiplier)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한 모든 소송에서 학부모에게 서면상의 합의 제의가 주어진 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규칙 제68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나 주 정부 차원의 검토가 달력 기준으로 절차 개시 10일 전까지 제의된 경우

합의 제의가 달력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부모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구제조치가 해결 제의보다 학부모에게 더 유리한 것이 없다고 법원 또는 행정법판사(ALJ)가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승소하고 해결 제의를 거절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의 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의가 행정절차 또는 법원 소송의 결과로써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수임료 지급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문제해결회의는 변호사 수임료 제공과 관련하여 행정 심의회 또는 법원소송의 결과로써 소집되는 회의로 간주하지 않으며, 행정 심의회나 법원소송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IDEA 제B부에 따라 지급 결정을 내려야 할 변호사 비용 금액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소송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판단하는 경우

IDEA 제B부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을 시, 필요한 만큼의 상기 적법절차 심의회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헌법, 미국장애인법(1990), 1973년 재활법 제V편(제504조) 또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절차 및 구제조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부모가 IDEA와 겹치는 구제조치를 다른 법률에 따라 향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조치를 향유할 수 있으려면 법원으로 바로 가기 전에 먼저 IDEA에 따른 행정적 구제조치(공정 적법절차 심의회)를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입료

34 CFR §300.517

일반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부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변호사 수입료 중 일부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IDEA 제B부에 따라 제기된 어떤 소송에서도 법원은 (a) 변호사가 법원이 경솔했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다고 판시를 내린 이의신청이나 소송사건을 제기한 경우 **또는** (b) 소송이 경솔했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소송으로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 소송을 수행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학부모의 변호사에게 수입료 중 일부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승소한 주 정부 교육기관 또는 교육구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IDEA 제B부에 따라 제기된 어떤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제기가 이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하게 소송 또는 절차 비용을 늘리는 등의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학부모의 변호사에게 비용의 일부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승소한 주 정부 교육기관 또는 교육구에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결정

인정되는 변호사 수입료는 해당 소송 또는 심의회가 발생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종류 및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평균 요율을 기준으로

18 세가 된 학생은 성년으로 간주하므로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즉, IDEA 하에 있는 모든 부모의 권리가 학생에게로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자립하는 경우와 결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법에 따라 아직 18 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학생을 성년처럼 대우합니다

워싱턴 주법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결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성년이 되어도 학부모의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일신상의 결정만을 내리도록 제한하는 보호규정이 있을 경우 법적 보호인이 학생을 대신해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학생이 18 세가 되기 일년 전부터 실시하는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는 학생이 18 세에 도달할 경우 IDEA 하의 모든 권리가 학생 자신에게 이전된다는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이 성년이 되면 학생과 부모에게 권리 이전에 관한 통지서가 제공될 것입니다. Part B 에 필요한 모든 기타 통지문도 학생과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가족교육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 따라 교육 기록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18 세 성년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외부교육평가

34 CFR §300.502; WAC 392-172-150

학부모는 교육구에서 학생에게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외부교육평가(IEE)를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외부교육평가(IEE) 요청 시 교육구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IEE 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해당 평가에 대한 교육구의 표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외부교육평가(IEE)*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실시하며, 해당 평가자는 학생의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구에 소속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자금이라 함은 개별 교육평가 비용을 모두 교육구가 지불하거나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함을 뜻합니다.

공공자금으로 받는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는 교육구에서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자금으로 학생에게 외부교육평가(IEE)를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공공자금으로 외부교육평가(IEE)를 요청할 경우 교육구는 달력 기준으로 요청일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a) 학생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사실 또는 학부모가 받은 학생의 평가가 교육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함. **또는**, (b) IEE를 공공자금으로 제공함..

교육구가 요청한 심의회에서 교육구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정을 받아도 외부교육평가(IEE)를 계속 받을 수는 있으나 공공자금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가 학생에 대해 외부교육평가(IEE)를 요청할 경우 교육구는 실시된 해당 평가에 대한 반대 사유를 학부모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육구에 그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으며, 교육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자금으로 시행되는 외부교육평가 제공을 지연해서도 안 되며, 교육구의 평가를 변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심의회를 지연해서도 안 됩니다..

학부모는 교육구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평가를 수행할 때마다 공공자금으로 실시되는 외부교육평가(IEE)를 단 한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실시한 외부교육평가

학부모가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학생의 IEE 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가 개인 자금으로 수행한 학생의 평가결과를 교육구에 통지하는 경우,

민사소송(제소기간 포함)

34 CFR §300.516; WAC 392-172-360

일반

각 당사자가 적법절차 심의회(징계절차에 관한 심의회 포함)의 사실인정서와 결정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적법절차 심의회 심의 대상이었던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해당 관할권을 지닌 주 법원(이 유형의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 법원) 또는 분쟁 금액에 상관 없이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행정법판사(ALJ)의 결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소송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행정절차의 기록을 수령함

학부모나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심의함, **그리고**

우세한 증거 원칙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구제조치를 명령함

지방법원의 관할

미국의 지방법원은 분쟁금액에 상관 없이 IDEA 제 B 부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조항

IDEA 제B부의 어떤 규정도 해당 법률에 따라 IDEA 제B부에 의거할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한 구제조치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사실인정서와 결정서를 OSPI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에 따른 이의제기

결정의 최종성, 재판청구에 따른 이의제기

34 CFR §300.514; WAC 392-172-360

적법절차 심의회(징계절차에 관한 심의회 포함)에서 작성한 결정서는 심의회에 참여했던 각 당사자(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심의회 의 일정 및 편의성

34 CFR §300.515

30 일간의 문제해결 회의기간이 만료한 후에 45 일까지 또는 조정된 문제해결기간이 만료된 후 45 일까지,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결정서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우송합니다..

행정법판사(ALJ)는 각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 설명된 45 일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심의는 한번에 한 차례 실시되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적당히 편한 시간에 가까운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구는 학부모가 제공한 IEE가 교육구의 IEE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하여 내리는 모든 결정에 본 IEE의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학생에 관한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IEE 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ALJ)의 평가 요청

행정법판사(ALJ)가 적법절차 심의회 중에 학생의 IEE 를 요청하는 경우에 평가 비용은 공공자금으로 충당합니다..

교육구 기준

IEE 를 공공자금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평가 장소와 심의회 담당관의 자격을 비롯한 평가 기준은 교육구가 평가를 개시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다만 이 기준이 IEE 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구는 공공자금으로 IEE 를 취득하는 것에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나 시한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비밀보장

정의

34 CFR §300.611; WAC 392-172-400

‘정보의 비밀보장’이라는 제목하에 사용되는 경우

*기록파기*는 개별신원확인 사항을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정보 내용에서 삭제하여 해당 정보를 통해 더 이상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기록은 미연방규정(CFR) 제 34 조 제 99 항(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1974 년 법률 20 U.S.C. 1232g(FERPA)의 시행령)의 '교육기록'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 유형을 말합니다.

참여기관은 장애인교육법(IDEA) Part B 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하거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출처의 기관이나 기구를 말합니다.

개인 신상정보

34 CFR §300.32; WAC 392-172-402

개인 신상정보는 다음 정보를 의미합니다..

- (a) 학생의 이름, 학부모 이름, 다른 가족의 이름
- (b) 학생의 주소
- (c) 개인의 신상번호(사회보장번호나 학생증번호), 또한
- (d) 개인적 특징들을 정리한 목록 또는 아동의 신원을 매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학부모에게 통지

34 CFR §300.612; WAC 392-172-404

OSPI 는 규정에 따라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개인신상정보의 비밀보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워싱턴 주의 여러 인구집단에제공되는 모국어 종류의 범위

개인 신상정보를 유지해야 할 학생, 요구하는 정보유형, 워싱턴 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 수집 방법(정보수집 출처 포함), 정보의 용도 등에 관한 설명

학생이 적절한 무상공립교육(FAPE)을 받았는지에 대한 행정법판사(ALJ)의 결정은 실제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고 내려야 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을 다룰 때 행정법판사(ALJ)는 절차적 부적절성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FAPE 를 받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공립교육(FAPE)을 받을 학생의 권리 침해

무상공립교육(FAPE) 제공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 기회의 상당 부분을 침범, 또는

교육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 야기

해석조항

상기의 어떤 규정에도 행정법판사(ALJ)는 교육구에게 IDEA 제 B 부에 따른 연방 법규 보호절차 조항의 요건(34 CFR §§300.500~300.536)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심의회 신청

IDEA 제B부에 따른 연방 법규 보호절차 조항의 어떤 규정도 학부모가 이미 제출한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와는 별개 문제로 별도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인정서와 결정서를 자문단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

OSPI 는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나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의 사실인정서와 결정서를 워싱턴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SEAC)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업무일로 심의회 개최 오(5)일 전까지 자신에게 제공되지 않은 증거물을 심의회 때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촉어적인 심의회 기록(전자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도 선택 가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심의의 문서 혹은 전자 촉어 기록을 얻을 권리

추가 공개 정보

학부모와 교육구는 업무일로 적법절차 심의회가 개최되기 5일 전까지 수행된 모든 평가 자료와 이들 평가에 기초하여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심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권고사항을 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법판사(ALJ)는 당사자가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의회에서 해당 평가나 권고사항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심의회에서의 학부모 권리

학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는 권리

심의회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할 권리, 그리고

심의회 기록, 사실인정서, 결정서를 무료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심의회 결정

34 CFR §300.513

행정법판사(ALJ)의 결정

개인 식별정보의 보관, 제3자 공개, 보유 및 파기에 관하여 교육구가 준수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의 요약, 그리고

34 CFR 제99부의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률(FERPA)과 시행령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의 모든 권리 설명

'학생 확인(Child Find)'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확인/찾기/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색출/확인/평가하는 활동에 관한 통지를 학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적절한 부수를 확보한 신문이나 기타 매체 또는 두 매체 모두에 게재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검토권

34 CFR §300.613 ~ §300.617; WAC 392-172-408

학부모는 학생과 관련하여 교육구가 IDEA 제 B 부에 따라 수집/보관/사용하는 교육기록을 열람/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교육기록을 열람/검토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일 없이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관한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회(문제해결회의나 징계에 관한 심의회 포함)가 열리기 전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가 신청한 후에 45 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기록을 열람/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당한 요청에 관해 교육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학부모가 교육기록 사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기록을 효과적으로 열람/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기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교육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대리인에게 교육기록을 열람/검토케 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교육구나 기타 기관은 보호자 제도, 별거 및 이혼 등의 문제에 적용되는 주 정부 해당 법률에 따라 학부모에게 자녀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교육구에 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가 자녀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검토에 대한 기록

각 참가기관은 학부모 및 기록 열람/검토를 인가받은 참가기관 직원 이외에 장애인교육법(IDEA) Part B 에 따라 수집, 보존, 사용되는 교육기록을 열람/검토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름, 열람 날짜, 정보 사용이 승인된 목적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기록

교육기록이 아동 두 명 이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 열람 및 검토하거나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록 종류와 입수 장소 리스트

각 참가기관은 학부모 요청 시 해당 기관이 수집, 보존, 사용하는 교육기록의 유형 및 소재지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각 참가기관은 IDEA 제 B 부에 따라 학부모에게 발행한 교육기록 사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교육기록을 열람/검토하는 권리 행사를 실제로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IDEA 에 따라 정보를 회수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심의 대상

적법절차 심의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심의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의회 신청 시한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심의회 신청서에서 다룬 문제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부터 2 년 이내에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한의 예외

학부모가 다음 사유를 이유로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구가 학부모가 심의회 신청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고 명시적으로 잘못 주장하는 경우, 또는

교육구가 IDEA 제 B 부에 따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했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심의회에서의 권리
34 CFR §300.512; WAC 392-172-354**

일반

적법절차 심의회(징계절차 심의회 포함)의 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장애학생의 문제에 관해 특수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동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증거를 제출하고 출석한 증인을 반대 심문하며 대답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와 교육구가 문제해결회의의 결과 합의를 작성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업무일로 3 일 이내에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

34 CFR §300.511; WAC 392-172-352

일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제출되면 분쟁과 관련 있는 학부모 또는 교육구에는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행정법판사(ALJ)

심의회는 행정심리국(OAH)에 고용된 자격을 갖춘 독립 행정판사(ALJ)가 주관합니다.

행정법판사(ALJ)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OSPI나 학생의 교육 또는 관리에 관련되는 교육구의 직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정법판사(ALJ)로 근무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급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의회에서 행정법판사(ALJ)의 객관성과 충돌하는 개인적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IDEA 규정, IDEA에 관한 연방 및 주 정부 규정, IDEA에 대한 연방 및 주 법원의 법률적 해석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표준적인 법률관행에 따라 심의회를 수행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리며 문서화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구별로 각 심의회 담당관의 자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행정법판사(ALJ)로 근무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변경

34 CFR §300.618 ~ §300.621; WAC 392-172-418

IDEA 에 따라 수집/보관/사용되는 학생의 교육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학생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구에 정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요청 접수 시점부터 적절한 기간 이내에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의회 기회

교육구가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정보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에 학부모에게 거절의사를 알리고 심의회 권리가 있다는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심의회를 신청하여 학생의 교육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수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의회 절차

교육구의 심의회는 FERPA 에 따른 심의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심의회 결과

교육구가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기록에 있는 정보를 진술하고 교육구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기록이나 제기된 부분을 보관하는 동안 진술서를 학생의 교육기록의 일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구가 학생의 교육기록이나 제기된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진술서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 공개 동의

34 CFR §300.622; WAC 392-172-422

교육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가 FERPA 에 따른 부모의 동의 없이 승인된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학부모의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를 참가기관 직원에게 공개할 때 아래에 명시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IDEA 제 B 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기 교육서비스(Transition Services)를 제공 또는 지급하는 참여기관 직원에게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우선학부모의 동의 또는 주법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유자격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학생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있는 교육구와 학부모가 거주하는 교육구 사이에 학생에 관한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먼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공립 교육구에 등록하고자 하거나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호

34 CFR §300.623; WAC 392-172-424

각 참여기관은 개인식별정보 수집, 보관, 공개, 파기하는 단계에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각 참여기관의 직원 1명이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보하는 책임을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못한 경우, 학부모는 행정법판사(ALJ)에게 달력 기준으로 45일간의 적법절차 심의회 시한의 개시를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 일간의 문제해결기간의 조정/변경

학부모와 교육구가 문제해결회의를 생략하기로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 달력 기준으로 45일간의 적법절차 심의회 시한이 다음 날에 개시됩니다..

조정 또는 문제해결회의가 개시된 후 그리고 달력 기준으로 30일간의 문제해결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부모와 교육구가 합의 불가능하다고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 달력 기준으로 45일간의 적법절차 심의회 시한이 그 다음 날에 개시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달력 기준으로 30일간의 문제해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정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조정을 계속할 것을 서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나 교육구가 조정절차를 철회하면 달력 기준으로 45일간의 적법절차 심의회 시한은 그 다음 날에 개시됩니다..

해결 합의서

문제해결회의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에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교육구 대표가 서명해야 함, 그리고

해당 관할권이 있는 워싱턴 주 고등법원 또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함.

합의검토기간

학부모와 교육구가 제목 '조정'하에 기술된 조정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문제해결기간

교육구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달력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45일간의 시한은 30일의 문제해결기간이 만료한 때에 개시됩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30일간의 문제해결기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모두 문제해결절차를 포기하거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것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가 문제해결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회의 참석에 동의할 때까지 문제해결절차 및 적법절차 심의회 시한이 지연됩니다..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런 활동을 문서화한 후에 교육구가 학부모의 문제해결회의 참석을 얻어낼 수 없으면 교육구는 달력 기준으로 30일간의 문제해결기간이 만료될 시 행정법판사(ALJ)에게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을 문서화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시간과 장소를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자 노력했던 교육구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화를 했거나 시도한 전화의 세부 기록 및 통화 결과

학부모와 공립교육기관 양자 간에 왕래한 통신문 사본, 그리고

학부모의 가정 또는 직장 방문 그리고 방문 결과에 대한 세부 기록

교육구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달력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문제해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문제해결회의에 참석하지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IDEA 제B부 및 FERPA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보장에 관한 주 정부 정책과 절차에 관해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기관은 개인식별정보에 입수할 수 있는 기관 내 직원의 이름 및 직위 목록을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로 작성 비치해야만 합니다.

정보(문서) 파기, 유치 및 보관

34 CFR §300.624; WAC 392-172-426

해당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집/보관 또는 사용되는 개인신상정보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정보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폐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상황, 수업 참가도, 최종 학년 수준이나 졸업년도 등은 기한을 두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록보관에 관한 주 법률은 RCW 제 40.14 장입니다. 교육구 기록보관절차는 공문서 및 기록관리국 서기가 공표합니다..

교육 기록부 전송

RCW 28A.225.330

워싱턴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교육구 등록 학생의 부모에게 (1) 특수교육프로그램 배치 경력, (2) 과거, 현재 또는 미해결된 징계조치건 또는 (3) RCW13.04.155 에 열거되어 있는 행동을 범했던 이력이 있는지를 학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주법은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서 학생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작성한 영구 생활기록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기록에는 징계처벌 기록과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을 포함한 학업 성과가 포함됩니다.

등록 교육구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이전에 다녔던 교육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일(수업일 기준) 이내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분쟁해결절차

학부모는 아이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학부모의 참여는 학생의 특수교육 초기 의뢰부터 시작합니다. 공립교육청(OSPI) 특수교육과는 항상 학부모와 교육구에 협력하여 학생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직접 대화를 나누어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다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에는 3~21 세 학생이 IDEA 제 B 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쟁해결절차, 즉 조정, 시민의 이의신청, 적법절차 심의회를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조정

34 CFR § 300.506; WAC 392-172-310 ~ 317

일반

조정 서비스는 확인, 평가, 교육배치, FAPE 제공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적법절차 심의회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학부모나 교육구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조정은 임의적이며,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를 받을 권리를 제한 또는 연기하거나 장애인교육법(IDEA)의 제 B 부(Part B)에서 명시하는 주어진 여타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중재 합의를 작성하고 학부모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교육구의 대표가 서명하여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중재회의에서 있었던 토론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떤 적법절차 심의회나 연방법원 또는 워싱턴 주 법원의 민사소송에서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면 동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 합의 자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 내용은 법적

밝혀지고 해당 학생이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받는 것에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교육구는 논쟁 대상이 아닌(즉, 학부모와 교육구가 모두 동의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해결절차

34 CFR §300.510

문제해결회의

교육구는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15 일 이내 그리고 적법절차 심의회 시한이 개시되기 전에 학부모 및 신청서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보유한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의 팀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학부모가 변호사와 같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 변호사의 참석을 제외시킬 수도 있음..

학부모와 교육구는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의 해당 팀원들의 회의 참가를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교육구가 분쟁을 해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와 신청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회의를 생략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견본 양식

34 CFR §300.509

공립교육청(OSPI)은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을 돕기 위해 모범 적법절차 심의회 요청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식은 OSPI 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www.k12.wa.us/ProfPractices/adminresources/forms.aspx> 또는
<http://www.k12.wa.us/SpecialEd/mediation.aspx>

학부모는 해당 교육구의 특수교육 부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법절차 심의회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가 부인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 양식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학부모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서신을 신청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회 신청 및 심의회 절차 진행 동안의 학생 배치

34 CFR §300.518

제목 ‘**장애학생의 징계절차**’ 아래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해결절차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공정 적법절차 심의회 또는 법원절차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부모와 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 학생이 배치받은 교육적 환경에 계속 있게 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공립학교로 초기 입학 신청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상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서 IDEA 제 C 부에 따른 서비스를 받다가 3 살이 지나 IDEA 제 B 부로 이행, 이제 더 이상 제 C 부에 의거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을 위해 IDEA 제 B 부에 따른 초기 서비스 신청을 다루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생이 지금껏 받아 온 제 C 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이 IDEA 제 B 부에 의거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적법한 재판관할을 지닌 모든 주 정부 법원이나 미국 지방법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조정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교 측에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인사를 만날 기회를 제의하는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 내에 있는 적절한 대체 분쟁해결기관,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또는 지역사회 학부모 자원 센터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정절차의 이익을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조정절차의 사용을 권장하는 역할을 할 사람

조정인의 공명정대

조정은 자격을 갖추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인 조정 기술을 교육받은 개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규에 밝아야 합니다. 공립교육청(OSPI)은 조정을 수행할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해당 외부기관은 조정자들의 목록을 보존합니다. 조정인은 임의로 지명하거나 돌아가면서 지명하거나 기타 공명정대한 기준에 따라 지명합니다.. 조정인은 (1) 공립교육청(OSPI), 교육구, 또는 조정절차의 대상인 학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타 주 정부기관의 직원일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없습니다. 조정회의는 학부모와 교육구가 편리한 장소에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와 특수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의 조사 차이점

IDEA 제 B 부와 연방 법규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의신청과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구, 공립교육청(OSPI), 교육 서비스 지구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제 B 부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누구든지 특수교육 시민 이의신청절차를 공립교육청(OSPI)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육구만이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장애학생의 확인, 평가 또는 교육배치, 장애아에 대한 적절한 무상공립교육 제공 개시 또는 변경할 것을 제안하거나 거절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이의신청과 적법절차 심의회의 기간 및 절차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이의신청절차

34 CFR §§300.151 - 300.153; WAC 392-172-324 - 328

학부모, 개인 또는 단체가 교육구, OSPI, 또는 장애인교육법(IDEA)의 적용을 받는 기타 교육단체가 IDEA 제 B 부와 그 시행령, 이에 상응하는 주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부모는 공립교육청(OSPI) 특수교육부서(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이의신청서에는 반드시 서명이 필요하며 하기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장애인교육법(IDEA)의 Part B 의 요건과 동법의 이행명령, 이와 관련된 주법이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진술서
1. 교육구의 이름(이의신청이 교육구 이외의 기관에 대한 것이면 그 기관의 명칭과 주소)
 2.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문제점에 대한 기술 및
 3. 학부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공립교육청(OSPI)은 이의신청서 접수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용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은 OSPI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12.wa.us/SpecialEd/pubdocs/Citizen_Complaint_Request_Form.pdf

심의회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변경하는 경우 문제해결회의의 시한(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달력 기준 15 일 이내)과 해결 시한(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달력 기준 30 일 이내)은 변경된 신청서가 제출된 날 또는 행정법판사(ALJ)가 신청을 허가한 날에 다시 개시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대한 교육구의 답변

교육구가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기술된 문제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의 제목에서 명시하는 사전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발송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달력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술한 답변서를 학부모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서 제기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외했거나 거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이 고려한 다른 선택사항 설명 및 해당 선택사항이 거부된 이유

교육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안 혹은 거부한 근거로 사용한 개별평가 절차나 사정, 기록, 보고서에 대한 기술, 그리고

교육구의 조치 제안이나 거절에 관련되는 기타 요소에 대한 설명

위 1~4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바로 위 소제목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에 대한 교육구의 답변**'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접수한 당사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달력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신청서의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다른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 학부모와 교육구가 알고 있고 입수 가능한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안

적법절차 심의회 이전 심의회 신청서에 관한 통지 필요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아래에 열거된 정보가 기술된 신청서 사본을 OSPI에 제출할 때까지 적법절차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심의회 신청서의 충분성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계속 진행되려면 신청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충분성**은 신청서가 상기 내용 요건에 부합함을 의미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는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받은 당사자가 15 일(달력 기준) 이내에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정법판사(ALJ) 및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하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행정법판사(ALJ)는 심의회 신청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통지를 받은 때부터 5 일(달력 기준) 이내에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위에 열거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여 즉시 학부모와 교육구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심의회 신청서 수정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에만 심의회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문제해결회의를 통해 심의회 신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가 개시되기 5일 전까지 심의회 담당관이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 년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조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SPI를 통해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하기의 OSPI 특수교육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k12.wa.us/SpecialEd/>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공립교육청(OSPI)은 학부모가 서명한 이러한 형태의 서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가 없을 경우 달력 기준으로 60 일 이내에 조사하여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OSPI 는 60 일 동안 (1) 교육구나 기타 기관에 학부모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을 주도록 요구하고, (2) 이의신청서의 주장 사실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의신청인에게 부여하며, (3) OSPI 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독자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교육구나 기타 기관이 IDEA 제 B 부와 시행령, 이에 상응하는 주 정부 법률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조사기간 연장, 결정서

60 일간의 조사기간은 (1) 특정 이의신청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2) 학부모와 교육구 또는 관련 기타 공립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결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판결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교육구에 송부됩니다. 판결문은 이의신청서에서 주장되는 모든 진술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또 각 주장 사실마다 사실 인정, 결론, 이의신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적절한 교정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조치

OSPI 에서 위반이 있다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결정하는 특수교육 시민 이의신청절차에는 판결문에 다음 사항을 기술해야 합니다..

적절한 금전배상, 기타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교정조치의 수행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거부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앞으로 적절하게 제공하는 조치

특수교육 시민 이의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심의회

적법절차 심의회의 대상이기도 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의신청서에서 다루는 여러 문제 중 하나 이상이 심의회의 대상인 경우 OSPI 는 심의회가 끝날 때까지 심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의신청 부분의 심사를 보류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의 부분이 아닌 이의신청 문제는 이의신청 시한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절차 심의회(심의에서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서 결정된 문제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이 구속력을 미치며, OSPI 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항의서는 공립교육청(OSPI)이 해결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 34 CFR §300.507 ~ §300.513

일반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학생의 확인/평가/교육배치 또는 FAPE 의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할 것을 제안하거나 개시/변경을 거절하는 문제에 관해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학부모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에서 '학부모'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포함되고 '교육구'에는 교육구의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신청서 제출

심의회를 신청하려면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상대방에게 적법절차 심의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하기의 모든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또한 OSPI 의 행정자원 서비스 (Administrative Resource Services) 부서의 다음 주소로 심의회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Administrative Resource Services
Old Capitol Building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팩스: 360-753-4201

적법절차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이름

학생의 주소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

집이 없는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생의 연락처와 다니는 학교의 명칭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실 포함), 그리고